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MSDS-NO.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물마그마 하도 투명(V420-A4001K)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1) 용도 콘크리트, 시멘트몰타르용 하도
- (2)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

- (1) 회사명 강남제비스코(주)
- (2) 주소 경기 군포시 농심로 8(당정동)
- (3) 긴급전화번호 031-451-3611

2. 유해성 위험성

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A
- 심한 눈손상성/눈자극성 구분1
- 피부 과민성 구분 1A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위험

- 유해 위험문구

-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킴
-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예방조치 문구 (예방)

- P260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 P264 취급 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 등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예방조치 문구 (대응)

- P301+P330+P331 삼켰다면 :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십시오).
- P304+P340 흡입하면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1 MSDS 4항에 기재된 처치를 하시오.
- P333+P313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2+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십시오.

- 예방조치 문구 (저장)

-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십시오.

- 예방조치 문구 (폐기)

P501 환경부 지정 폐기물업체를 통하여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NFPA)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함량
Water	물	7732-18-5	70 - 80
영업비밀		SalesSecret	10 - 20
1,3-Bis (Aminomethyl) benzene	1,3-비스(아미노메틸)벤젠	1477-55-0	5 - 1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때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20분 이상 화학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씻어낸 후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처치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때

순한 세제 또는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화학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씻어낸 후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처치를 받을 것.

다. 흡입했을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라. 먹었을때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특정한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용기가 가열, 폭발하여 비산된 물은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적절한 보호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날카로운 것에 의해 보호의, 보호장구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오염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타지역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을 것.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모래, 보루, 기름처리제 등의 흡수제로 닦아내고 폐기용 용기에 담아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 요령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호안경, 보호의를 착용할 것. 실내에서는 환기를 유지할 것.

나. 안전한 저장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시오

8.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생물학적 노출기준등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국내규정)

화학물질명	노출기준
1,3-Bis (Aminomethyl) benzene	STEL : C 0.1 mg/m ³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하시오

다. 개인보호구(호흡기보호, 눈보호, 손보호, 신체보호)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물리적상태, 색 등)

유동성 액체

나. 냄새

순한 자극성 냄새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C)

자료없음

사. 인화점(°C)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01 - 1.05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방전,충격,진동 등)

습기

열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a. 급성독성

● 경구독성

-제품 (ATEMix :) 1001.3188

-[1,3-Bis (Aminomethyl) benzene] : LD50 = 980 mg/kg Rat (SIDS, NITE)

● 경피독성

-제품 (ATEMix :) 27135.2278

-[1,3-Bis (Aminomethyl) benzene] : LD50)3100 mg/kg Rabbit (ECHA)

● 흡입독성

-제품 (ATEMix :) 146.8723

-[1,3-Bis (Aminomethyl) benzene] : Dust LC50 1.12 mg/ℓ 4 hr Rat (OECD TG403, GLP) (ECHA)

b.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1,3-Bis (Aminomethyl) benzene] :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비가역적인 과사가 발생함(과사 지수 : 4) (EU Method B.4) (ECHA)

c.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1,3-Bis (Aminomethyl) benzene] : 피부부식성 물질로 눈부식성으로 분류

d. 호흡기 과민성

-[1,3-Bis (Aminomethyl) benzene] : 자료없음

e. 피부 과민성

-[1,3-Bis (Aminomethyl) benzene] :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피부독성이 발생함(OECD Guideline 429, GLP) (ECHA)

f. 발암성

-[1,3-Bis (Aminomethyl) benzene] : 자료없음

g. 생식세포 변이원성

-[1,3-Bis (Aminomethyl) benzene] :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음성 (OECD Guideline 474, GLP) (ECHA)

h. 생식독성

-[1,3-Bis (Aminomethyl) benzene] : 랫드를 이용한 최기형성/모계독성/발달독성 시험결과 생식독성이 발생하지 않음(발달독성 NOAEL = 300mg/kg 모계독성 NOAEL = 100mg/kg) (OECD Guideline 414) (ECHA)

i.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

-[1,3-Bis (Aminomethyl) benzene] : 마우스를 이용한 경피독성시험결과 구부러진 자세, 호흡곤란, 탈모, 홍반과사가 발생함 급성독성영향으로 본 항목에서 분류에 적용하지 않음 (ECHA)

j.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1,3-Bis (Aminomethyl) benzene] : 랫드를 이용한 28일반복경구독성시험 (OECD TG407, GLP)결과 타액 분비증가, 위막 이상 NOEL = 150 mg/kg bw/day 랫드를 이용한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OECD TG413, GLP) 결과 30 mg/m3 군의 1차 검시결과 약한 기관지 상피 퇴행, 기관지 편평상피화 및 폐에서 약한 아급성 염증 관찰됨. NOAEC = 5 mg/m3 (ECHA)

k. 흡인 유해성

-[1,3-Bis (Aminomethyl) benzene]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어류

-[1,3-Bis (Aminomethyl) benzene] : LC50 87.6 mg/ℓ 96 hr Oryzias latipes(OECD Guideline 203, GLP)

● 갑각류

- [1,3-Bis (Aminomethyl) benzene] : EC50 15.2 mg/ l 48 hr Daphnia magna(OECD Guideline 202, GLP)

● 조류

- [1,3-Bis (Aminomethyl) benzene] : EC50 = 14 mg/ l 72 hr (NITE), ErC50 33.3 mg/ l 72 hr (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OECD Guideline 201, GLP) (ECH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1,3-Bis (Aminomethyl) benzene] : log Kow 0.18 (Estimate)

● 분해성

- [1,3-Bis (Aminomethyl) benzene] :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 생물 농축성

- [1,3-Bis (Aminomethyl) benzene] : 자료없음

● 생분해성

- [1,3-Bis (Aminomethyl) benzene] : Biodegradability = 22 (%) (NITE), 49 % 28 day (non-Degradable) (ECHA)

라. 토양이동성

- [1,3-Bis (Aminomethyl) benzene] : 자료없음

마. 오존층 유해성

- [1,3-Bis (Aminomethyl) benzene] : 자료없음

- [1,3-Bis (Aminomethyl) benzene] : crustaceans:Daphnia magna: NOEC, 21d, = 4.7 mg/L, OECD Guideline 211, GLP, algae: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NOEC, 72h, = 22.9 mg/L, OECD Guideline 201, GLP(ECHA)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도로, 빈용기 및 도로로 오염된 흡착포, 필터등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하십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UN No.)

해당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PAINT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 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

해당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명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 진단	관리대상 물질	금지물질	허가대상 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특별관리 대상물질	PSM 제출 대상물질
1,3-Bis (Aminomethyl) benzene	N	N	N	N	N	N	Y	N	N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사항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로테르담 협약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KOSHA, 국립환경과학원, EU directive 67/548

나. 최초 작성일자(GHS / MSDS)

2020.01.20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0 (N) /

라. 기타

자료없음

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한 '사업주의 MSDS 작성비치'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MSDS는 내부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업적 용도 등으로는 금지되므로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정하여 제공하는 권한은 강남제비스코(주)에 있으며, MSDS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Tel) : 080-727-7777, 야간 : 070-4297-8099